

의안번호	2209637
의 퇴 인	박균택의원
회 답 일	2025.6.11.
추계번호	25D2138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이전사업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5조 (이전 지역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의 특례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과 별도로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며, 세부사업은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6조 (부담금의 면제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면제해주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등도 감면·면제대상에 추가함	의무규정
6	안 제17조의2 (이전지역 이주자 지원) 신설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보증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7조의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7조의4 (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7조의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함(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7조의6(기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기부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재산의 평가방식을 양여재산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함	의무규정
11	안 제17조의7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신설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 및 처리비를 공제함	의무규정
12	안 제17조의8 (기부대양여 특례)	국가는 이전사업 중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3	안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	
4	안 제15조 (이전 지역 지원)	
5	안 제16조 (부담금의 면제 등)	
6	안 제17조의2 (이전지역 이주자 지원) 신설	
7	안 제17조의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	
8	안 제17조의4 (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신설	

9	안 제17조의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10	안 제17조의6(기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11	안 제17조의7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신설	
12	안 제17조의8 (기부대양여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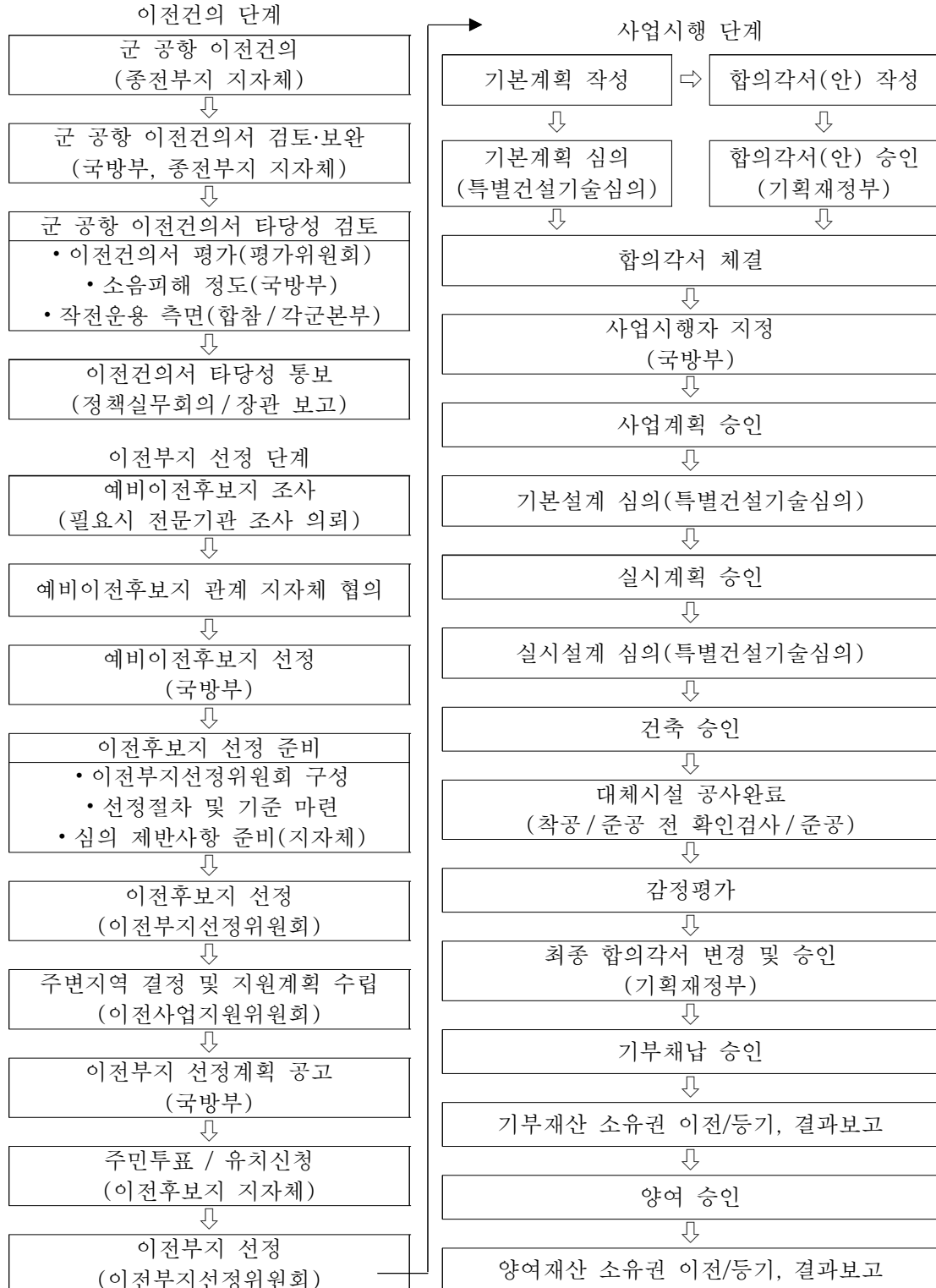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이전사업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필요한 비용 보조·융자 지원, 이전지역에 대한 특례사업 시행, 이전지역 이주자에 대한 지원,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및 면제,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 평가 특례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¹⁾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전부지가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작성·심의가 완료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최초로 이루어지게 됨
-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아직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된다.

<참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 절차도]



자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국방부훈련 제2857호, 별표1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